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플러스자산운용(주)
(영문명) Plus Asset Management Co.,Ltd.
(홈페이지) www.plusasset.com

본 정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사학연금회관13층
(전 화) 02-3787-2700

대 표 이 사 : 박찬흥

담 당 임 원 : (직 책)경영기획본부장
(성 명)구자열 (전 화)3787-2750

작 성 자 : (직 책)경영기획팀 대리
(성 명)경아름 (전 화)3787-2751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 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2015누580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의 신탁업자)
3. 청구내용	감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담당 변호사 위임을 통한 대응
6. 접수일자	2015년 09월 21일
7. 확인일자	2015년 09월 2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156 2015.08.21 원고승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주2)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3)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